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04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김승원 · 이성윤 · 민병덕
박범계 · 허 영 · 박상혁
정준호 · 강준현 · 이건태
박균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국민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우수 제품 등의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운영에 필요한 심사 절차, 사후관리, 인증 제품의 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제조사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경쟁력 강화

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신설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4. 제1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 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품이 제1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⑦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11항에 따른 인증기준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사의 세부 면제 범위에 대하여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게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⑩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제6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인증기준과 절차, 취소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2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업무

제75조제2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32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2조의3(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u>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u> <u>2.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u>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4. 제1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 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품이 제1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⑦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11항에 따른 인증기준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사의 세부 면제 범위에 대하여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게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5. (생략)

<신설>

16. ~ 27. (생략)

③ ~ ⑤ (생략)

② -----

-----.

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제32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16. ~ 2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